



지급보증서

보증 번호:PEBSEL000377

보증처 : 미우미우 공식 온라인 스토어 재화구매자들

주채무자 명칭 : 프라다코리아 유한회사

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39

보증한도액 : KRW100,000,000 (금일억원정)

보증기간 : 2020년 08월 25일부터 2021년 08월 24일까지

피보증 채무의 내용

- 1) 보증기간 동안 프라다가 운영하는 프라다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한 보증처의 구매 주문 취소 요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, 그리고
- 2) 프라다가 운영하는 프라다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보증처가 구매한 프라다 재화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

상기 중 어떠한 경우이든 프라다 공식 온라인 스토어의 판매 약관을 준수합니다 (“피보증 채무”).
 보증서에 따른 청구: 보증처는, 보증 기간 중에 프라다가 피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(“채무불이행 사유”) 이로 인해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, 보증서의 조건에 따라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
청구기간 : 보증기간 만료 이후 2개월 이내에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본 보증서 원본이 반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행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.

본 보증서에 첨부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(보증처 용) 제 3 조에 따라,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(“당행”)이 본 보증서의 조건에 의하여 보증처에 지급을 한 경우, 이후에 다른 보증처에 의한 이행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지급액 만큼 본 보증서의 보증한도액은 감액됩니다

본 보증서에 따른 이행 청구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1) 보증처가 채무 불이행 사유로 손해를 입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
- 2) 프라다가 작성한 채무불이행 사유에 대한 현금 환불 거절 확인서
- 3) 구매 증빙서류(현금영수증 등)
- 4) 본 보증서의 원본 또는 프라다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본 보증서의 사본

본 보증서에 따라 이행 청구를 한 보증처에 대한 지급은 청구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.

채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보증처의 청구에 대하여 본 보증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프라다가 피보증 채무를 불이행한 해당 프라다 재화의 구매를 위해 보증처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본 보증서에 따른 보증처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, 추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며, 이 경우 이러한 추가 금액은 보증 한도금액 산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.

본 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은 오로지 당행에 의해 대한민국 법률(시행령, 규정, 명령 및 포고를 포함)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집니다. 당행은 전쟁, 대한민국정부의 조치에 의한 환전 또는 이체의 제한, 징발, 강제 이체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증 채무 불이행 및 이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에




대한 책임이 없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당행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보증인은 UN, EU 또는 미국의 제재 목록에 등재된 자, 또는 해당 미국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이콧 금지법, 테러리즘 금지법, 자금세탁방지법, 미국 제재 법이나 홍콩 금융당국, 영국, 대한민국이 발표, 집행 및 이행하는 제재를 포함한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자에게 본 보증서에 따른 자금 이체 및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.

본 보증서는 당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이전될 수 없으며, 또한 관련 제한에 따라 보이콧 (Boycott), 제재(Sanctions) 또는 통상금지(Embargo)가 적용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 또는 이전될 수 없습니다.

본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이에 첨부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(보증처용)에 따라 당행은 주채무자의 피보증채무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.

본 보증서는 청구보증통일규칙 (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, ICC Publication No. 758) 의 적용을 받으며,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합니다. 민법 제 436조의 2(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)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.



J R Yoon, GTRF



J W Kim, GTRF
2020년 08월 25일
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



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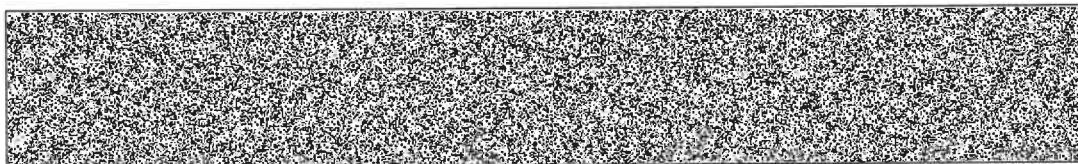
(Revenue Stamp o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)

고 유 번 호 : 2009930-110916946
 (Certificate No.)
 수 입 인 지 금 액 : 10,000원
 (Stamp Duty Amount)
 성 명 (상 호) : 홍콩상하이은행
 (N a m e)
 생년월일/사업자번호 : 1028400679
 (Registration No.)
 발 급 처 : 인터넷 / 신한은행
 (Stamping Channel)
 발 급 일 자 : 2020.08.24
 (Certificate Issued Date)

기획재정부 장관
(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)



* 전자수입인지를 위변조 및 복사(copy)하여 중복 사용할 경우,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

< 사용 방법 >

* 전자수입인지는 1회 출력만 가능하며(프린터 시험인쇄 요망), 제출서류 1건의 과세금액을 1매로 첨부(添附)하여 사용합니다.

< 전자적 소인 처리 방법 >

* 행정기관에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,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.

(접수한 공무원의 전자적 소인처리 절차는 gov.e-revenuestamp.kr에서 수행)

*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인(私人)간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는 경우, www.e-revenuestamp.or.kr 에서 전자적소인 처리하여 전자수입인지가 "사용"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부정한 재사용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주의사항 : 소인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사용 및 환매가 불가하오니 신중한 소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.

< 환매 방법 >

*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는 구입처에 환매(액면금액의 97% 상당액)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인터넷 발급분의 경우 우체국 및 금융회사(은행 등)를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.